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IT검사국 부서	담당자 (직위, 성명)	안기복 선임검사역	연락처	02-3145-7429
요청대상 행위	□ 내부망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 운영서버를 DMZ구간에				
	할당하여 공개용 웹서버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				
	제1호에 위반하는지 여부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
판단이유	□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7조제1항제1호는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				
	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(이하 "DMZ구간")에				
	, ,				
	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하도록 하였으며,				
		~1 n= ~. 1 —1	alalan Al	-1-1 -1.	1 -1 -11 -1
	○ 동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				
	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인터넷				
	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				
	□ 상기 규정에 비추면 전산실 내에 위치한 내부 서버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*에				
	대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므로,				
	네이의 할다구르도 한다이의 아이프로,				
	* DMZ구간은 외부통신망에 해당(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2호나목)				
				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
	○ 문의하신 사실관계	l 하에서 귀사	의 가상 운영	서버 구성	l은 규정에 위반하는
	것으로 보입니다.				
	Д== = п 1 1;				

- \*\*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 항·제2항 참조)
 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